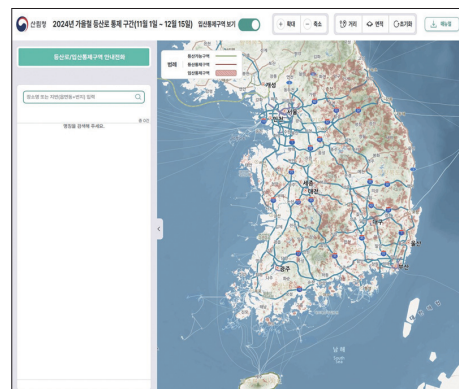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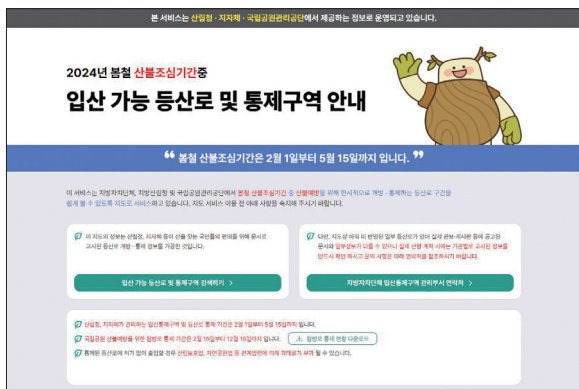


Q1

산불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매일, 매시간 산불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1만 2천명의 산불감시원과 약 1만 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신고 단말기를 이용해 발생지점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생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산불이 커지기 전에 초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등산로 폐쇄와 입산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입산자실화가 산불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31.2%(10년평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산불에 취약한 지역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에서의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인화물질 제거반을 운영하여 사전에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방 통제 등산로 구간 검색 사이트 https://hiking.kworks.co.kr/new_intro.aspx